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관광기본법 시행령(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) 전부개정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국가관광전략회의 소속이 대통령으로 격상되고, 관광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 평가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이 안전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관광기본법이 개정(2026.4.28. 공포, 2026.10.29. 시행)됨에 따라 회의 구성, 운영 등 전반적 개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국가관광전략회의(“이하 생략”) 기능에 관한 사항(안 2조의 1, 2 개정, 3 신설)
 -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‘관광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및 이행점검’에 관한 사항 명시하고 일부 자구 수정

「관광기본법」

기존안	개정안(10.29.시행)
제16조(국가관광전략회의)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·조정,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.	제16조(국가관광전략회의)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·조정,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·반영 등에 관한 사항 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(이하 “전략회의”라 한다)를 둔다.

- 구성에 관한 사항(안 3조제1항 개정)
 - 대통령 주재 회의로 격상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을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으로 변경하고 관광정책 유관 부처의 장(산업통상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)을 구성원으로 추가
- 회의의 소집에 관한 사항(안 4조제1항 개정)
 - 유사 타 입법례를 참조할 때 ‘회의의 개최’ 조항을 ‘회의의 소집’으로 제목 개정

「국민경제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조(회의의 소집 등) ①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- 회의의 소집 절차에 관한 사항(안 4조제2항 신설)
 - 유사 타 입법례를 참조하여 회의 소집에 따른 일시, 장소 등 통보 규정 구체적 명시

「국민경제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조(회의의 소집 등) ② 간사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·발언하는 자에게 회의 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」 제3조(회의의 소집 등) ① 의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원회의(이하 “전원회의”라 한다),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회의(이하 “자문회의”라 한다)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(이하 “심의회의”라 한다)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회의의 위원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출석·발언하는 사람에게 회의의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 ‘회의의 운영’ 명칭에 관한 사항(안 5조제1항 개정)

- 체계(제목) 수정

○ 의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(안 5조제2항 개정)

- 타 입법례를 참조하여 의장 직무 대행 관련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적시

「국민경제자문회의법」 제4조(회의의 소집 등) 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 제3조(회의의 소집 등)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부의장에게 전원회의에 관한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회의 또는 심의회의에 관하여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

○ 간사에 관한 사항(안 6조 개정)

- 전략회의의 소속 격상(국무총리→대통령)에 맞추어 회의의 운영 및 실무 지원을 문체부에서 담당

○ 의안 제출에 관한 사항(안 7조 개정)

- 안 6조 간사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

○ 실무조정회의에 관한 사항(안 8조제1항 개정)

- ‘주체’ 중심의 차관조정회의 명칭에서 ‘기능’ 중심의 실무조정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여 회의의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

「경제관계장관회의의 규정」 제10조의2(실무조정회의) ①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.

○ 실무조정회의에 관한 사항(안 8조제2항 개정)

- 실무조정회의의 주 기능 명시

「경제관계장관회의의 규정」 제10조의2(실무조정회의)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회의의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○ 실무조정회의 의장에 관한 사항(안 8조제3항 개정)

- 실무조정회의를 대통령비서실 관광 분야 수석비서관 주재로 하여, 부처 간 쟁점 사항을 사전에 완결성 있게 조율할 수 있도록 강화

○ 자문회의에 관한 사항(안 9조 신설)

- 전문가 그룹 정책 참여 강화를 통한 적시성있는 전략회의 안건 발굴 및 실행력 확보와 지속적인 정책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구성과 상설 운영 규정 신설

○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에 관한 사항(안 10조 신설)

- 지역관광 활성화, 관광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현안 등 국가 관광 정책이 지역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,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시 소통 및 지자체의 정책 건의 창구를 공식화하고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구성에서 지방의 건의 사항 적극 반영을 위한 조문 신설

○ 운영세칙 관한 사항(안 11조 개정)

- 전부개정 내용에 맞추어 자구 수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·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·반영을 명시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,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, 대통령이 의장이 되도록 하는 관광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의 구성,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